■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19. 12. 31.> 공장소음·진동의 배출허용기준(제8조 관련)

1.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

[단위: dB(A)]

	시간대별			
대 상 지 역	낮 저녁		밤	
	$(06:00 \sim 18:00)$	$(18:00 \sim 24:00)$	(24:00~06:00)	
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		45 이하	40 이하	
및 녹지지역(취락지구·주거개				
발진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				
진흥지구만 해당한다), 관리	50 이하			
지역 중 취락지구·주거개발진				
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				
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				
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				
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		50 이하	45 이하	
및 준주거지역, 도시지역 중				
녹지지역(취락지구·주거개발	55 이하			
진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				
흥지구는 제외한다)				
다.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		55 이하	50 이하	
중 수산자원보호구역, 관리지	CO 이러			
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	60 이하			
그 밖의 지역				
라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·준공				
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	65 이하	60 이하	55 이하	
발진흥지구				
마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	70 이하	65 이하	60 이하	
및 전용공업지역	10 5	00 9	00 1-1	

비고

- 1.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.
- 2.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3.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(취락지구·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)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- 4.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-5dB을 보정한다.
- 5. 관련시간대(낮은 8시간, 저녁은 4시간, 밤은 2시간)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

백분율이 12.5% 미만인 경우 +15dB, 12.5% 이상 25% 미만인 경우 +10dB, 25% 이상 50% 미만인 경우 +5dB, 50% 이상 75% 미만인 경우 +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.

- 6.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- 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하다.
 - 나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,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공공도서관,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(이하 "정온시설"이라 한다)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 - 다.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
2.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

[단위 : dB(V)]

		[[[]] ([[])
	시간대별	
대상 지역	낮	밤
	(06:00~22:00)	(22:00~06:00)
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·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·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	60 이하	55 이하
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·준주거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,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 외한 그 밖의 지역	65 이하	60 이하
다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·준공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	70 이하	65 이하
라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	75 이하	70 이하

비고

- 1.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.
- 2. 대상 지역의 구분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3.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.
- 4. 관련시간대(낮은 8시간, 밤은 3시간)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% 미만인 경우 +10dB, 25% 이상 50% 미만인 경우 +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.
- 5.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- 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 - 나.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 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.
 - 다.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.

■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9, 12, 31.>

소음・진동배출시설(제2조의2 관련)

1. 소음배출시설

가.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・기구

- 1) 7.5kW 이상의 압축기(나사식 압축기는 37.5kW 이상으로 한다)
- 2) 7.5kW 이상의 송풍기
- 3) 7.5kW 이상의 단조기(기압식은 제외한다)
- 4) 7.5kW 이상의 금속절단기
- 5) 7.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.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(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)
- 6) 7.5kW 이상의 탈사기
- 7) 7.5kW 이상의 분쇄기(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)
- 8) 22.5kW 이상의 변속기
- 9) 7.5kW 이상의 기계체
- 10)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
- 11) 37.5kW 이상의 혼합기(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 상으로 한다)
- 12) 37.5kW 이상의 공작기계
- 13) 22.5kW 이상의 제분기
- 14) 15kW 이상의 제재기
- 15)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
- 16) 37.5kW 이상의 인쇄기계(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,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)
- 17) 37.5kW 이상의 압연기
- 18) 22.5kW 이상의 도정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 지역·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)
- 19) 37.5kW 이상의 성형기(압출·사출을 포함한다)
- 20) 22.5kW 이상의 주조기계(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)
- 21)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
- 22) 15kW 이상의 펌프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·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)
- 23) 22.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(습식신선기 및 합사·연사기를 포함한다)
- 24) 22.5kW 이상의 초지기
- 25) 7.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
- 26) 위의 1)부터 25)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.5kW 이상(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)인 경우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・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)

- 참고: 위 26)에서 동력합계 37.5kW 이상(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)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.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0.9, 22.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0.9, 22.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0.8, 37.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실제동력에 0.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.5kW 이상 (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)인 경우를 말한다.
- 나.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・기구
 - 1)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
 - 2)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
 - 3) 자동제병기
 - 4) 제관기계
 - 5)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
 - 6) 40대 이상의 직기(편기는 제외한다)
 - 7) 방적기계(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)
- 다. 그 밖의 시설 및 기계 · 기구
 - 1) 낙하해머의 무게가 0.5톤 이상의 단조기
 - 2) 120kW 이상의 발전기(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)
 - 3) 3.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
 - 4) 석재 절단기(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.5kW 이상으로 한정한다) 비고
 - 1.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·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
 - 가.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(A) 이하인 경우
 - 나.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(A) 이하인 경우
 - 2.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·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·판 매자 또는 수입자가 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·검사기관(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.
- 2. 진동배출시설(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・기구로 한정한다)
- 가. 15kW 이상의 프레스(유압식은 제외한다)
- 나. 22.5kW 이상의 분쇄기(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)
- 다. 22.5kW 이상의 단조기

보지 아니하다.

- 라. 22.5kW 이상의 도정시설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)
- 마. 22.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
- 바. 37.5kW 이상의 성형기(압출·사출을 포함한다)

- 사. 37.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
- 아.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
- 참고: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·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

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대상 시	 업장 구분		환경기술인 자격기준
1. 총동력합계 3,7	50kW 미만인	사업장	○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
			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
			중에서 임명하는 자
2. 총동력합계 3,7	50kW 이상인	! 사업장	○소음·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
			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
			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

참고

- 1. 총동력 합계는 소음배출시설 중 기계·기구의 동력의 총합계를 말하며, 대수기 준시설 및 기계·기구와 기타 시설 및 기계·기구는 제외한다.
- 2.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중 소음·진동기사 2급은 기계분야기사·전기분야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.
- 3.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은 대상 사업장의 소재지역 및 동력규모에도 불구하고 위 표 중 1.의 대상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인을 둘 수 있다.
- 4.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.